

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[양육비부담조서(집합건물)]

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 구 금 액

금 ○○○원 및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 까지 매월 00원의 금원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가정법원 20○○호협 ○○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집행력있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.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신 청 취 지

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



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.

2.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양육비 지급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 확정

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서 oo가정법원 20oo호협 ooo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oo. oo. oo. '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이혼신 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oo만원을 매월 15일 에 지급한다'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.

2.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

- 가. 그러나, 채무자는 협의이혼 이후,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나. 이 사건 신청일 이전인 20oo. oo. oo. 기준으로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금 ooo만원

- = { 20oo. oo. oo.(협의이혼신고 이후 최초 지급일) ~ 20oo. oo. oo.(이 사건 신청일) 까지 00개월 x 월 00만원 }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정본



1. 송달증명원	1통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각 1통
1. 주민등록표초(채무자)	1통
1. 혼인관계증명서	1통
1.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》	청통보용),
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	각 1통
1. 법원보관금영수증	1통
1. 이해관계인목록	2통
1. 부동산목록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 지]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00시 00구 00동 00-000

[도로명주소] 00시 00구 000로000

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oo층 지하o층 공동주택 (아파트)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00층 제000호

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oooom²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토지의 표시 : 1. oo시 oo구 oo동 oo-ooo 대 ooom²
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1. 0000분의 0000. 끝.



[별 지]

이해관계인의 표시

1. 1번근저당권자 ◉●은행

○ ○시 ○ ○ 구 ○ ○ 길 ○ ○ (우편번호) 대표자 은행장 ◎ ● ● (소관 ● ● 지점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2번근저당권자 ◆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3번근저당권자 ■■■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	
제출부수 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: 1통 제출)		
(신청인)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불복절차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및 기간 (이해관계인)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)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함.	
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, 10,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, 6, 3.자 68마378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